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 규탄 및 대한민국 헌법 평화통일 원칙 수호에 관한 결의안

의안 번호	18983
----------	-------

발의연월일 : 2026. 05. 14.

발 의 자 : 윤상현 · 박대출 · 김형동
김기웅 · 유용원 · 성일종
고동진 · 강선영 · 안상훈
최보운 · 조배숙 · 김선교
박충권 · 이현승 · 윤재옥
김 건 · 임종득 · 김기현
이종배 · 김도읍 · 이달희
곽규택 · 박수민 · 김예지
김민전 · 안철수 의원
(26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를 통해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
하여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헌법」 제3조 및 제4조가 천명한 영토적 일체성과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에 반하는 국
내외의 일체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두 국가론 헌법 명문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이것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유엔 및 주요국에 적극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4조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북한의 두 국가론을 기정사실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을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헌법 개정의 법적·정치적·군사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종합 대응전략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범적 효력을 구체화하고, 통일 원칙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북한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별개의 국가로 명시하는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헌법상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짐. 또

한 국무위원장의 책무력 지휘권까지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책무력 고도화와 대남 적대노선을 국가 최고규범 차원에서 제도화하였음.

이는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영토 개념과 두 국가 체제를 헌법에 공식 반영한 것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시도이자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관계로 전환하려는 중대한 체제 변화로 평가됨.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국가의 헌법적 책무로 천명하고 있음. 또한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역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바 있음.

그럼에도 최근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현실적 평화공존 모델로 해석하거나, 대한민국 헌법상 통일 및 영토 조항의 수정 필요성을 거론하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국가 정체성과 평화통일 원칙의 규범적 의미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분단 고착화 전략에 결과적으로 동조할 우려가 있음.

북한이 헌법 차원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원칙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 지향의 헌법 정신을 확고히 수호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함.